

등록번호	복지지원과-20794
등록일자	2014.11.25.
결재일자	2014.11.2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맞춤지원팀장	복지지원과장	복지환경국장		
이하연	김미선	박기석	전결 11/25 김병규		
협 조					

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구 긴급복지지원 집중홍보 추진계획

서울의 중심
중구



복지환경국
복지지원과

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구 긴급복지지원 집중홍보 추진계획

동절기 도입에 따른 신 빈곤층 발생이 우려되는 바 '긴급복지지원 집중홍보' 추진을 통해 소득·재산이 긴급복지사업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생계비·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-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, 제2조, 제3조
- 「2014년 긴급지원사업안내」 지침
- 긴급복지지원 대국민 집중홍보기간운영 협조요청(보건복지부, '14.4.14.)
- 화재사건 등 관련 긴급복지지원 적극 실시안내(보건복지부, '14.5.29.)
- 긴급복지 동절기 신속한 연료비 지급협조 안내(보건복지부, '14.10.23.)

II 추진 방향

-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 긴급복지사업 중점 추진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홍보 실시(
※ 긴급복지사업 중점 추진지역 (1차): 회현동, 약수동, 청구동, 중림동
- 세부 추진 방향
 - 중점 추진지역 : 현수막 설치
 - 그 외 추진지역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전광판, 홈페이지 홍보 및 통(반)장, 직능단체 등 회의 시 홍보

III

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 계속(집중홍보기간 : 동절기)
- 사업비 : 376,876천원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- 지원대상 :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략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
 -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
 - 소득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일 것(단,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% 이하)

가구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소득기준 (120%)	724,083	1,232,900	1,594,941	1,956,984	2,319,026	2,681,067
소득기준 (150%)	905,104	1,541,125	1,993,677	2,446,230	2,898,783	3,351,334

- 재산기준 : 13,5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 :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
- 지원내용 : 가구실태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지원
 - 생계지원 : 식료품비·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
 - 의료지원 :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
 - 주거지원 :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
 - 교육지원: 초·중·고생 수업료, 입학금,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 비용 지원
 -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: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
 - 연료비지원 : 긴급복지 주급여 지원가구에 한해 지원(동절기)

IV

세부 지원계획

① 생계지원

- 지원대상 :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
- 지원방법 : 지원결정(5일 이내)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
(단, 거동불편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거나, 직접 물품구매 곤란한 경우 현물지원)

- 지원내용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생계지원 기준 적용 (원/월)

가구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399,900	680,900	880,900	1,080,800	1,280,800	1,480,700

※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00,000원씩 추가지급

- 지원기간 : 최대 3개월(최대 6회 지원가능)

② 의료지원

- 지원대상 :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
 -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
 -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
- 지원방법
 -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(원칙적으로 입원전 신청)
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확인 등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
 - 입원전 ‘지원결정통보서’ 발급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
 -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
- 지원내용 : 300만원 범위 내 지원
 -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지료료 항목 제외
- 지원기간 : 원칙 1회 지원(최대 2회 지원가능)

③ 주거지원

- 지원대상 :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
- 지원방법
 - 자치구가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
 - 임시거소 확보 곤란시 예외적으로 주거 소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
- 지원내용 (원/월)

지역	가구수	1~2인	3~4인	5~6인
대도시		357,600	594,200	783,700

※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94,700원씩 추가지급

- 지원기간 : 최대 3개월(최대 12회 지원가능)

4 교육지원

- 지원대상 :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·중·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지원방법 : 지원결정(5일 이내)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
- 지원내용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생계지원 기준 적용

(원/월)

구 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지원금액	204,700	325,900	399,300원 및 수업료

- 지원기간 : 원칙 분기 1회 지원(최대 2회 지원가능)

5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

- 지원대상 :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지원방법 : 해당시설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
- 지원내용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생계지원 기준 적용

(원/월)

가구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495,000	844,300	1,092,400	1,339,400	1,587,500	1,835,600

※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00,000원씩 추가지급

- 지원기간 : 최대 3개월(최대 6회 지원가능)

6 그 밖의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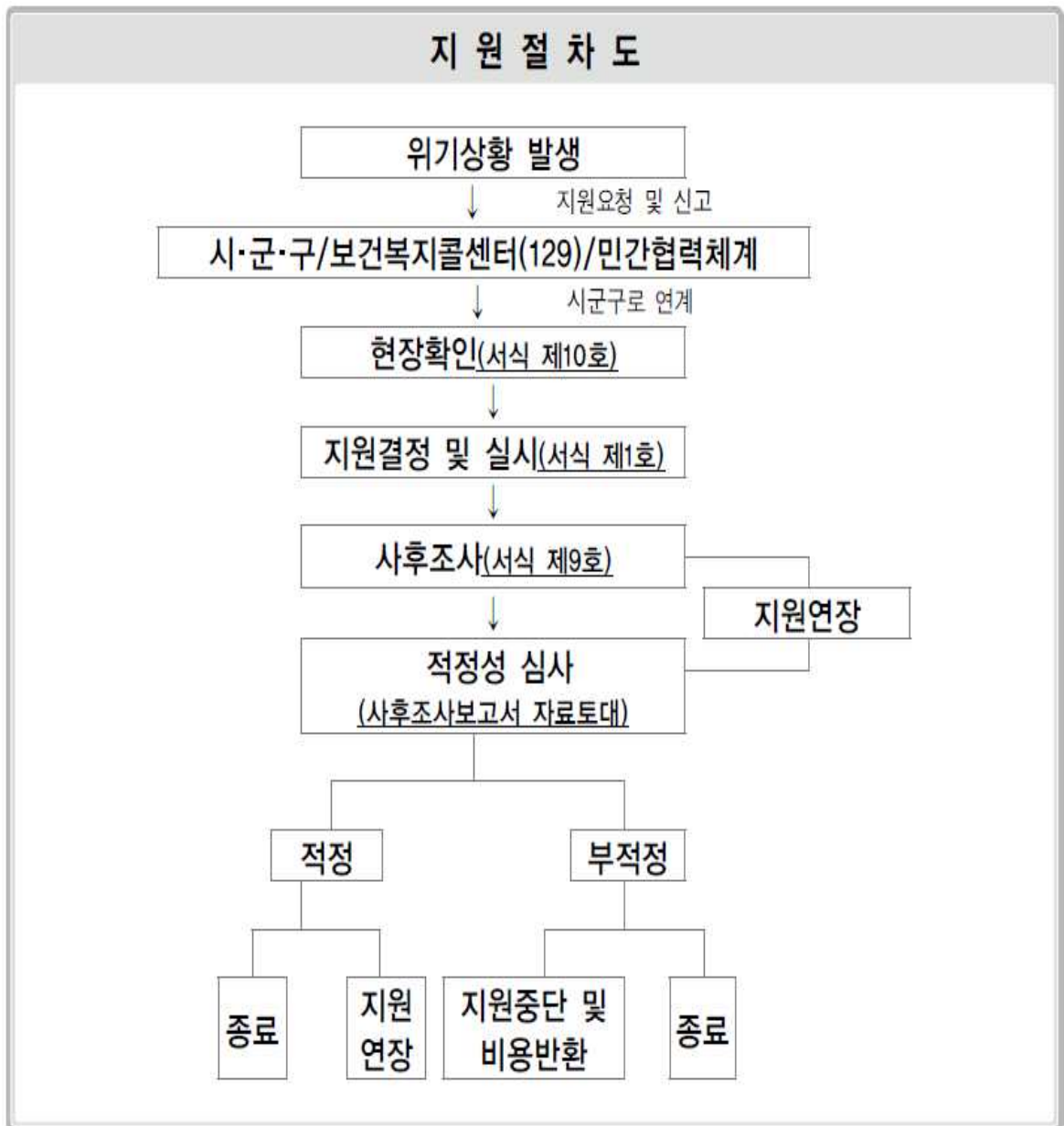
(원/월)

지원종류	연료비 (동절기에 한함)	해산비	장제비	전기요금
지원금액	88,800	600,000	750,000	500,000

V

지 원 절 차

- ① 현장조사 : 지원요청(신고)이 있는 경우 현장방문조사
- ② 지원결정 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
- ③ 현금지원 :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(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)
- ④ 지원 적정성 조사 : 지원 후 소득·재산조사를 실시, 부적격자는 환수조치
- ⑤ 절차도



VII

행정 사항

- 매월 홍보실적 제출(각 동) : 다음 달 5일
-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(각 동)
- 긴급복지지원 접수 및 결정(복지지원과)
- 언론보도 등 홍보(공보실)